생활에 필요한 기타세법 ①

글/ 임현석 세무사

1. 명의자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Q 명의자 명의로 추징세금을 실질소득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명의자 재산에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통보에 의하여 부득이 명의자는 명의자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A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2. 법인세 무신고시에 납세의무성립일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Q 유통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도중 부도로 도산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체납이 발생되었고, 관할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형과 동생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였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무신고시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언제인지? 형과 동생이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며, 부도 등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6촌이내의 부계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3.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Q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의 후발적사

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오랜 소송기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시 기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지 여부

A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같은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임.

4. 공시지가의 경정이 후발적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Q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신고 및 결정하였을 경우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변경되어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5.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 자가 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Q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연말정산시 대학원학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오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Q 확정신고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등 제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했으며, 신고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어,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실지매매계약에 의거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본 결과, 기신고 소득이 많게 신고된 것을 알게 되어 확정신고후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A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끝〉